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~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세대 구성원을 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(안 제10조제1항제1호)

- 1)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, 이외의 경우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하되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1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(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)의 신청
2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(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의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도시형 생활주택)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.	제10조(도시형 생활주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소형 주택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.·나. (생략) 다.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	1. ----- ---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라.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(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	<u><삭 제></u>

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
수(제2항 단서에 따라 소
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
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
포함한다)의 3분의 1(그 3
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
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.7
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
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
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
2분의 1까지로 한다)을 초
과하지 않을 것

마. (생 략)

2. · 3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마. (현행과 같음)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69